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는
법률을 이 법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로 한정 등〉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4388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는 법률을 이 법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로 한정(안 제3조제4항 신설) ..	3
2.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권고의 수용 의무화 (안 제14조제3항)	9
3. 기금의 통합·폐지 권고의 근거 마련 및 권고의 수용 의무화 (안 제15조제2항 신설)	13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의무화 등 (안 제16조제1항 개정, 안 제16조제6항 삭제)	17
5.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의 적용(안 제30조 신설)	21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부
2. 제출연월일 : 2024. 9. 27.
3. 회부연월일 : 2024. 9.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여 권고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금 설치 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의 통합·폐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금의 통합·폐지를 위한 조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여 기금의 내실 있는 정비를 유도하며, 기금의 무분별한 신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은 이 법 또는 이 법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지방세입 감소 등 예상하지 못한 재정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자율적으로 설치·운용하던 것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2항, 제30조 및 별지 신설).

Ⅲ. 검토의견

1.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는 법률을 이 법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로 한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는 법률을 이 법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로 한정하려는 것임. 다만, 법률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운용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동 내용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안 제3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①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금 신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금 설치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④ 제1항에 따른 기금은 이 법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운용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별표] <u>지방자치단체 기금 설치 근거 법률(제3조제4항 관련)</u>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2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4항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6. 「식품위생법」 제89조 7.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 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9. 「의료급여법」 제25조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11. 「재해구호법」 제14조 1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6조, 제267조제3항 및 제351조제5항 13.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 14.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 15. 「청소년 기본법」 제56조 1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1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3항 및 제4항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임¹⁾.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특별 회계와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데 특히,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됨²⁾.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현행 「지방자치법」 제159조³⁾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설치, 운영할 수 있고,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⁴⁾제1항에 따라 법률로 설치할 수 있음.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2023년 결산 기준 총 2,636개이고, 2023년 조성액은 59조 7,563억원임. 이 중 법률로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1,747개이고 조성액은 48조 7,773억원임. 법률로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중 법률에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기금은 1,211개, 조성액은 5조 2,998억원이고, 법률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536개, 조성액은 43조 4,775억원임.

1) 행정안전부 예규 제294호,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참고] 지방자치단체 기금 제도 개요 부분

2) 신가희, 박성문, “서울시 기금 성과분석과 정비·관리방안” 9면, 2022, 서울연구원

3)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①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금 신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현황(2023년 결산 기준)]

(단위: 개, 억원)

구분	개수	예산액
□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전체 합계	2,636	597,563
○ 조례로 설치한 특별회계	889	109,791
○ 법률로 설치한 특별회계	1,747	487,773
-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법정의무기금)	917	425,574
재난관리기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7)	243	26,056
재해구호기금(「재해구호법」 §14)	15	4,068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26)	28	8,734
주민지원기금(「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1)	114	2,402
식품진흥기금(「식품위생법」 §89)	242	3,416
옥외광고발전기금(「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6조의2)	192	1,208
관광진흥기금(「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46)	1	440
지역농어촌진흥기금(「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67)	1	2,609
자활기금(「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8조의7)	170	2,999
고향사랑기금(「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11)	205	1,065
- 법률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법정재량기금)	536	434,775
통합재정안정화기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6)	231	222,823
중소기업육성기금(「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8)	88	39,521
청소년육성기금(「청소년 기본법」 §56)	8	402
지역문화진흥기금(「지역문화진흥법」 §22)	26	1,593
양성평등기금(「양성평등기본법」 §42)	135	3,216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23	636
지역개발기금(「지방공기업법」 §19)	17	165,992
환경보전기금(「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51)	1	27
혁신도시조성및발전기금(「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49)	1	63
공공시설등설치기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2조의2)	2	13
공유재산관리기금(「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8조의2)	4	490

자료: 행정안전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기금의 수는 2013년 2,394개에서 2023년 2,636개로 10.1% 증가했고, 조성액은 2013년 16조 887억 원에서 2023년 59조 7,563억 원으로 271.4% 증가함. 조성액이 크게 증가한 시기는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지역발전기금이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되면서 17조 3,250억 원 증가했고, 2021년과 2022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액이 16조 원 증가함⁵⁾.

[2013년 ~ 2023년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조성 현황]

(개, 억원)

	기금수	조성액	연도별 조성액 증감 주요 요인
2013년	2,394	160,887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관리기금 감소(△3조 4,832억원)
2014년	2,380	164,272	서울시 통합관리기금 감소(△1조 360억원),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감소(△6,854억원)
2015년	2,364	172,664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1,428억원 증가
2016년	2,312	162,877	서울시 본청의 감채기금 중 회수불가능한 고정자산 성격의 장기투자증권을 기금조성액에서 제외(△1조 7,216억원)
2017년	2,323	336,127	2018년 회계연도부터 <u>지역발전기금</u> 이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17조 3,250억원 증가)
2018년	2,316	324,341	서울시 재정투융자 기금감소(△1조 7,216억원), 서울시 지역개발기금 감소(△2,521억원), 광주시 지역개발 기금 감소(△6,684억원)
2019년	2,403	408,543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안정화 기금 증가(4조 9,178억원), 자체기금 증가(1조 8,237억원), 통합관리기금 증가(1조 1,564억원)
2020년	2,400	388,863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감소(2조 42억원), 광역시·도의 지역개발기금 감소(1조 3,872억원) 등
2021년	2,413	482,309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u>통합재정안정화기금</u> 증가(6조 4,866억원), <u>지역개발기금</u> 증가(3조 938억원) 등
2022년	2,431	563,800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u>통합재정안정화기금</u> 증가(9조 5,641억원), 재난관리기금 증가(319억원) 등
2023년	2,636	597,563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감소(2조 1,243억원), 지역개발기금 증가(1조 8,733억원), 고향사랑기금 신설(1,064억원)

자료: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상)” 251면·253면,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상)” 261면·262면,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상)” 269면·270면

- 5)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상)” 251면·253면,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상)” 261면·262면,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상)” 269면·270면 참조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과 비교하여 사업의 집행 도중 사업계획과 지출금액을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고 자금의 신축적인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⁶⁾.

다른 한편 기금은 예산과 칸막이로 작용하여 일반회계·특별회계 사업과 기금 사업간 유사·중복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기금의 정비와 함께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⁷⁾.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의 성과를 분석하여 기금의 정비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의 경우에는 정비가 어려운 한계가 있음.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는 법률을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⁸⁾ 및 같은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로 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정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서는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⁹⁾.

6) 신가희, 박성문, “서울시 기금 성과분석과 정비·관리방안” 2면, 2022, 서울연구원

7) 신가희, 박성문, “서울시 기금 성과분석과 정비·관리방안” 3면, 2022, 서울연구원

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법 제16조), 지역상생발전기금(법 제17조), 지방소멸대응기금(법 제22조) 등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9)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2.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권고의 수용 의무화

개정안은 기금 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의 권고를 따르게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① · ②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 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되, 기금 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	③ ----- ----- ----- ----- ----- ----- -----

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점검 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u><후단 신설></u>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와 제3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u>이 경우 권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제1항,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같은 조 제3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분석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행정안전부가 2023년 12월에 작성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2022회계연도)에는 사업비 편성비율, 사업비 집행률, 타

회계 의존율, 재정수입 대비 기금조성액 비율, 기금 수 현황 등의 항목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거나 기금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2022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개선 권고사항]

항목	대상	내용
① 사업비 편성비율	‘심각(5% 미만)’ 36개 기초단체, ‘주의(5~10%)’ 37개 기초단체	권고대상 지자체는 기금 목적 내에서 사업 분야·대상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목적 既 달성 기금 또는 사업 추진이 곤란한 기금은 정비 필요
② 사업비 집행률	‘심각(20% 미만)’ 8개 단체, ‘주의(20~50%)’ 42개 단체	대상 지자체는 집행률 부진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 마련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민간전문가 비율 50% 미만인 839개 기금(광역 45개, 기초 794개)	해당 지표는 기금운용에 대한 외부 위원의 실질적 평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 전문가 50%이상 참여 미충족 기금은 지속 개선 필요
④ 타 회계 의존율	‘심각(90% 초과)’ 40개 단체, ‘주의(50~90%)’ 45개 단체	지속적으로 타 회계 의존율이 높은 기금*은 일반회계로 통합 또는 기금 수입구조의 개선 등 조치 검토 필요 * 2022년 타회계의존율 50% 초과 기금 : 271개 (광역: 37개, 기초: 234개)
⑤ 재정수입 대비 기금조성액 비율	‘심각(동종단체 평균 200% 초과)’ 41개 단체, ‘주의(평균 150% 초과)’ 18개 단체	기금조성액 비율이 동종단체 평균의 150%를 초과하는 단체는 기금의 과다 조성 여부를 검토하고, 특히 동종단체 평균의 200%를 초과하는 단체는 불필요한 기금 정비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⑥ 기금 수 현황	‘심각(동종단체 평균 200% 초과)’ 14개 단체, ‘주의(평균 150% 초과)’ 47개 단체	기금 수가 동종단체 평균의 150%를 초과하는 단체는 설치기금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특히 동종단체 평균의 200%를 초과하는 단체는 유사 기금 통합, 저성과 또는 불필요한 기금 폐지 등 정비 노력 필요
⑦ 기금 수입·지출 관리의 적정성		기금 수입·지출 관리 영역에 있어 수기 관리·결산 시 일괄 등록 방식을 중지하고, 수입·지출 시마다 e-호조 시스템 등록 필요
⑧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경상적 경비 비율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작성 내용 부실 등으로 가점을 받지 못한 지자체*의 경우 철저한 개선 권고사항 이행 등이 필요함. 경상적 경비 비율 : 감점 조치된 기금에 대해서 불필요한 경상적 경비 삭감 등 세출 부문의 구조조정이 필요함

자료: 행정안전부 2022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80면~82면 내용 정리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성과분석 결과 총 23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개선 권고를 실시했지만 105곳(45%)은 조치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았음.

개정안을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조치권고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조치 권고를 수용하도록 하도록 함으로써 운용 성과가 부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한 사례는 「지방재정법」 제55조의3제5항¹⁰⁾에 따른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에 대한 권고로서 현행법상으로는 예외적인 사례로 보이고, 「지방자치법」 제137조제2항¹¹⁾에서는 국가가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장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 제14조제3항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고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10) 「지방재정법」 제55조의3(재정위기단체 등의 의무 등) ① 제5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재정위기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의 이행상황을 지방의회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⑥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5항의 권고 또는 지도에 따라야 한다.

⑦·⑧ (생략)

11) 「지방자치법」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장려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3. 기금의 통합·폐지 권고의 근거 마련 및 권고의 수용 의무화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이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했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및 유사 중복 기금 등에 해당함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금을 폐지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기금의 폐지 등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권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게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①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u><신 설></u>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u>행정안전부장관은 기금(제1항 단서에 따른 기금은 제외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금을 폐지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금의 통합·폐지를 위한 조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이 그 설치의 목적을 달성했거나, 그 설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의 폐지 및 제정·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도록 하고 있음.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의 통·폐합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에는 349개의 기금이 172개로 통합되었고, 2006년에는 62개의 기금이 23개의 기금으로 통합되었으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49개의 기금이 71개의 기금으로 통합됨¹²⁾.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통·폐합 현황]

연도	통합 대상 기금 수(개)	통합 후 기금 수(개)	세부내용(개)
2005	349	172	재난관리기금 163, 사회복지기금 6, 기타 3
2006	62	23	재난관리기금 11, 제주도 관련 9, 사회복지 관련 2, 기타 1
2016	19	8	사회복지기금 3, 기타 5
2017	23	7	사회복지기금 3, 기타 4
2018	-	-	-
2019	5	2	사회복지기금 1, 기타 1
2020	82	4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3, 기타 1
2021	20	1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
합계	560	266	

자료: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상)” 264면 내용 정리

12)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상)” 264면

개정안 제15조제2항을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중 통·폐합 대상을 확인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통·폐합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하나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는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기금의 통·폐합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한 사례는 「지방재정법」 제55조의3제5항에 따른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에 대한 권고로서 현행법상으로는 예외적인 사례로 보이고, 「지방자치법」 제137조제2항에서는 국가가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장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 제14조제3항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고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의무화 등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에서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제한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개정, 안 제16조제6항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u>설치할 수 있다.</u>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 ----- ----- ----- ----- ----- ----- <u>설치하여야 한다.</u> ----- ----- -----.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위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위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 ⑤ (현행과 같음)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삭 제> ⑦ ----- 제5항----- ----- -----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기금임¹³⁾.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23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했고, 230개의 지방자치단체(광역 지방자치단체 17개, 기초지방자치단체 213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고 있음¹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현황]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설치 현황 (개)	93	93	178	217	226	231
운영 현황 (개)	81	86	154	210	219	230

* 설치현황은 조례 제정일 기준, 2020년까지의 명칭은 통합관리기금임.
자료: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상)” 264면

개정안 제16조제1항을 통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 아직 해당 기금을 설치하지 않은 13개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게 될 것으로 보임.

1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4)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상)” 264면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6항에 따르면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¹⁵⁾.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는 경우 그 중 일정 비율을 필요한 시점에 사용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을 적립하는데 소극적일 수 있음.

개정안을 통해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제한을 폐지하면 지방자치단체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을 통해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금의 사용 한도를 삭제하는 경우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의 고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15) (조례 예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 ③ (생략)

④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재정안정화계정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
3.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⑤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4항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의 적용

개정안은 이 법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설치·운용하는 기금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각각 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30조(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제17조에서 제29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설치·운용하는 기금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각각 본다.</u>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해당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¹⁶⁾).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은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제2항은 국가의 교육비 보조에 관한 사무는 교육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있음¹⁷⁾.

이를 고려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¹⁸⁾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을 준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과 관련된 기금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만, 해당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닌 교육감 및 교육부장관과

16) 「지방자치법」 제135조(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1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교육·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제18조(교육감)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제39조(교육비의 보조)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도의 교육비를 보조한다.

②국가의 교육비보조에 관한 사무는 교육부장관이 관장한다.

1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제39조(교육비의 보조)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도의 교육비를 보조한다.

②국가의 교육비보조에 관한 사무는 교육부장관이 관장한다.

관련되므로 개정안 제30조를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¹⁹⁾에도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문 의 처

02) 6788-5338

19) 「지방재정법」 제10조(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제59조는 제외한다)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 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부”로, “지방재정”은 “지방교육재정”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부령”으로 각각 본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부”로 각각 본다.